

[붙임2]

---

#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개정 전문]

---

2017. 1.

##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7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에 따라 전력설비의 정지분류 기준 및 통계항목 선정, 통계작성 방법 등을 정하는데 있다.

**제1.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에서 정한 중앙급전발전기 및 154kV 이상 송변전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발전기 조합에 관계없이 각 호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전력설비”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상호 연결된 전기설비(발전설비,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기타 부대설비 등)를 말한다.
- ② “발전정지”라 함은 운전중인 발전기의 차단기가 자체설비의 고장, 파급, 계획정비, 중간정비 및 급전지시 등의 사유로 전력계통에서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발전정지기간”이라 함은 발전기의 차단기가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된 후 발전을 재개하기 위하여 재투입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④ “출력감발”이라 함은 발전소 주요기기의 고장이나 손상,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설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발전기 정격용량에서 감발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출력감발기간”이라 함은 감발운전을 개시한 시점부터 감발운전의 사유가 해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⑥ “계획정지”라 함은 계획예방 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및 월간, 주간 발

전기 정지계획에 반영된 정지를 말한다.

- ⑦ “비계획정지” 라 함은 연간 및 월간, 주간 발전기 정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정지를 말한다.
- ⑧ “순간정지” 라 함은 재폐로 계전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고장이 복구된 정지를 말한다.

## 제2장 전력설비 정지유형별 분류기준

제2.1조(전력설비 정지유형별 분류) 이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전력설비 정지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발전기 정지유형별 분류

- 1. 계획정지 : 계획예방정비정지, 계획중간정비정지
- 2. 운영예비초과정지
- 3. 비계획정지 : 불시정지, 기동실패, 과급정지, 비계획정비정지

### ② 송변전설비 정지유형별 분류

- 1. 계획정지
- 2. 순간정지
- 3. 비계획정지

제2.2조(발전기 정지유형별 분류방법) ① 전력거래소는 발전기 정지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정지유형을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정지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상세 정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1조(계획예방정비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지는 계획예방정비 정지로 분류한다.

- ①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정지로서 전력 시장운영규칙 별표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절차” 7.2조에 의해 연간 발전기 정지계획에 반영된 정지
- ② 계획예방정비정지 준공 이전 부하시험 운전 중에 발생한 정지
- ③ 전력수급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여 사전 승인된 계획예방정비정지 개시일정을 연기하도록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경우, 연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정지

**제2.2.2조(계획중간정비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지는 계획중간정비 정지로 분류한다.

- ①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절차” 7.2조 연간 발전기 정지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동 절차 7.3조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 또는 7.4조 주간 발전기 정지계획에 따른 정지
- ② 설비정지 3일전에 정지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 확정된 정지. 단, 정지발생 3일전에 제출된 정지계획 중 전력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조기 정지시 계획중간정비정지로 분류한다.
- ③ 민원 또는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한 정지
- ④ 계획중간정비정지 준공 이전 부하시험 운전 중에 발생한 정지
- ⑤ 전력수급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여 사전 승인된 계획중간정비정지 개시일정을 연기하도록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경우, 연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정지

**제2.2.3조(운영예비초과정지)** 경제급전 우선순위 또는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기의 운전이 가능한 발전대기 상태의 정지

**제2.2.4조(불시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지는 불시정지로 분류한다.

- ① 계통에 병입하여 운전 중인 발전기(양수운전 중인 양수발전기 포함)가 정지발생 이전에 전력거래소에 정지통보와 입찰변경을 하지 않은 정지로서, 기동실패, 비

계획정비정지, 과급정지를 제외한 모든 비계획정지

제2.2.5조(비계획정비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지는 비계획정비정지로 분류한다.

- ①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8 7.2조, 7.3조, 7.4조의 발전기 정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정지로서, 정지 발생 이전에 정지예정임을 전력거래소에 사전 통보하고 입찰변경을 완료한 정지
- ② 정지발생 3일전까지 정지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정지
- ③ 전력거래소와 사전협의 없이 계획예방정비정지 및 계획중간정비정지 기간을 초과한 정지

제2.2.6조(기동실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지는 기동실패로 분류 한다.

- ① 정지중인 발전기가 전력거래소의 기동지시를 받고도 기동하지 못하거나, 계통 병입 후 정격용량의 50%이하 출력에서 발생한 정지
- ② (삭제)

제2.2.7조(과급정지) 계통에 병입하여 운전 중인 발전기 또는 계통병입을 위해 운전 대기 중인 발전기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요인으로 정지한 경우에는 과급정지로 분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요인에 의한 과급영향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① 발전소의 모든 인출 송전선로 차단에 따른 정지. 단, 발전소측 사유로 송전선로가 차단된 경우에는 불시정지로 분류한다.
- ② 가스공급 중단, 해양 생물유입에 의한 정지
- ③ 전력계통의 안정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발전기 탈락용 고장과급방지장치 동작에 의한 정지. 단, 발전소측의 귀책사유로 고장과급방지장치가 동작한 경우 불시정지로 분류한다.

- ④ 전력계통의 안정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저주파수계전기 동작에 의한 양수운전 중인 양수발전기의 정지. 단, 발전소측의 귀책사유로 저주파수계전기가 동작한 경우 불시정지로 분류한다.
- ⑤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가스터빈발전기의 불시정지, **기동실패, 비계획정비정지**로 인한 증기터빈발전기의 정지
- ⑥ 단독모드로 운전이 불가능한 복합화력발전기의 경우 증기터빈발전기의 불시정지, **기동실패, 비계획정비정지**로 인한 가스터빈발전기의 정지
- ⑦ 송전사업자 관리대상의 CT 또는 PT의 원인으로 인해 발전설비 보호계전기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여 발생한 정지. 단, 송전사업자 관리대상의 CT, PT가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⑧ 발전사업자(발전사업자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외부작업자 포함) 이외의 인적실수에 의한 정지. 단, 인적실수가 발전사업자 관리대상이면 불시정지로 분류한다.

**제2.3조(발전기 정지시간 산정방법)** 발전기 정지시간 산정은 발전기 정지시점부터 재가동시점까지의 연속되는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2.3.1조(계획예방정비정지 시간)** 전기사업자와 조정, 확정하여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계획예방정비정지 기간으로 하며, 종료시점은 준공시험을 완료한 시점 이전에 차단기가 최종 투입된 시점으로 한다.

**제2.3.2조(계획중간정비정지 시간)** 전기사업자와 조정, 확정하여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계획중간정비정지 기간으로 하며, 종료시점은 준공시험을 완료한 시점 이전에 차단기가 최종 투입된 시점으로 한다.

**제2.3.3조(운영예비초과정지 시간)**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의해 병해한 시점부터

발전기가 계통에 병입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2.3.4조(불시정지 시간)** 불시정지 발생 시점부터 발전기가 계통에 병입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전력거래소의 병입지시가 없을 경우 급전대기 가능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불시정지된 발전기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8 7.3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정지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날짜부터는 비계획 정비정지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2.3.5조(비계획정비정지 시간)** ① 비계획정비정지 발생 시점부터 발전기가 계통에 병입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전력거래소의 병입지시가 없을 경우 급전대기 가능시점까지로 한다.

② 불시정지, 과급정지, 기동실패 발전기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8 7.3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정지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날짜부터 계통에 병입되는 시점까지는 비계획정비정지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2.3.6조(기동실패 시간)** 전력거래소의 병입지시 시점 또는 기동실패한 시점부터 발전기가 병입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전력거래소의 병입지시가 없을 경우 급전대기 가능시점까지로 한다.

**제2.3.7조(과급정지 시간)** 과급정지 발생 시점부터 발전기가 계통에 병입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전력거래소의 병입지시가 없을 경우 급전대기 가능시점까지로 한다.

**제2.4조(송변전설비 정지종류 분류기준)** 송변전설비 정지종류는 계획정지, 순간정지, 비계획정지로 분류한다.

**제2.4.1조(계획정지)** 유지보수, 정비 또는 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정지를 신청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8의 8.4, 8.5, 8.6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승인한 정지

**제2.4.2조(순간정지)** 송변전설비에 손상이 없이 정지 후 자동적으로 복구된 정지

**제2.4.3조(비계획정지)** 예상하지 못한 고장 등의 원인에 의한 정지로서 순간정지를 제외한 정지

**제2.5조(송변전설비 정지시간 산정방법)** 송변전설비 정지시간은 정지시점부터 재투입시점까지 연속된 시간으로 산정한다.

### 제3장 정지통계 작성 및 관리

**제3.1조(통계자료 작성대상)** 전력거래소가 작성해야 하는 통계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발전설비 : 중앙급전발전기의 계획정지 및 비계획정지
- ② 송변전설비 : 154kV이상 송변전설비의 계획정지, 순간정지 및 비계획정지

**제3.2조(통계자료 제출)** ① 전기사업자는 보유설비에 대하여 매월 [붙임1]의 정지월보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출받은 정지월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통계내용)** 전력거래소는 제출받은 정지월보를 토대로 누락 등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붙임2]의 전력설비 정지통계 산식에 따라 정지통계를 작성한다.

### 제3.3.1조(발전설비 정지통계 항목)

- ① 불시정지율
- ② 비계획정지율
- ③ 계획예방정비율
- ④ 가동율
- ⑤ 운전율
- ⑥ 신뢰도

### 제3.3.2조(송변전설비 정지통계 항목)

- ① 순간정지, 일시정지, 장시간정지
- ② 전압별, 원인별, 설비별 정지건수
- ③ 송전설비는 100C-km당 정지건수, 변전설비는 100MVA당 정지건수
- ④ 전체 송전선로의 연평균 비계획정지 빈도
- ⑤ 연평균 총 비계획정지 기간
- ⑥ 비계획정지가 없는 송전선로의 연간 비율
- ⑦ 변압기의 전압별 정지율, 운전율

제3.4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전력거래소는 매년 전력설비 정지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장 보 칙

제4.1조(기준의 변경) 전력거래소는 필요시 관련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본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기준의 적용) 본 기준에서 정의한 정지분류는 정지통계관리에만 적용하며, 에너지 정산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4.3조(부칙)

- ① 이 기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 이 기준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④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⑤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붙임
1. 전력설비 정지월보 서식
  2. 전력설비 정지통계 산식
  3. 전력설비 정지원인 분류표







## [붙임 2]

### 전력설비 정지통계 산식

#### 1. 발전설비 통계산식

$$\text{가. 불시정지율} = \frac{\text{불시정지시간}}{\text{운전시간} + \text{불시정지시간}} \cdot 100$$

$$\text{나. 비계획정지율} = \frac{\text{비계획정지시간}}{\text{운전시간} + \text{비계획정지시간}} \cdot 100$$

$$\text{다. 계획정지율} = \frac{\text{계획예방정비시간} + \text{계획중간정비시간}}{\text{역일시간}} \cdot 100$$

$$\text{라. 가동율} = \frac{\text{운전가능시간}}{\text{역일시간}} \cdot 100$$

$$\text{마. 운전율} = \frac{\text{운전시간}}{\text{역일시간}} \cdot 100$$

$$\text{사. 신뢰도} = \frac{\text{역일시간} - \text{비계획정지시간}}{\text{역일시간}} \cdot 100$$

#### ※ 용어설명

- 불시정지시간 : 비계획정지 중 불시정지 상태에 있는 시간
- 운전가능시간 : 발전설비가 운전가능상태에 있는 시간
- 운전시간 : 발전설비가 운전상태에 있는 시간
- 계획정지시간 : 계획예방정비정지 및 계획중간정비정지 상태에 있는 시간
- 역일시간 : 1년, 365일, 8760시간

□ 정지율 계산식

발전소명	호기	정격용량 (MW)	정지시간 (H:M)								운전시간 (H:M)	역일시간 (H:M)	불시정지율 (%)	비계획정지율 (%)	계획정지율 (%)	가동률 (%)	운전율 (%)	신뢰도
			계획정지		비계획정지				운영예비초과	계								
			예방정지	중간정지	불시정지	비계획정비정지	과급정지	기동실패										
	#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2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합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I = B + C + D + E + F + G + H$$

$$J = K - I$$

$$L = \frac{D}{D + J} \times 100$$

$$M = \frac{D + E + F + G}{D + E + F + G + J} \times 100$$

$$N = \frac{B + C}{K} \times 100$$

$$O = \frac{H + J}{K} \times 100$$

$$P = \frac{J}{K} \times 100$$

$$Q = \frac{K - (D + E + F + G)}{K} \times 100$$

$$L = \frac{A \times L + A \times L}{A} \times 100$$

$$M = \frac{A \times M + A \times M}{A} \times 100$$

$$N = \frac{A \times N + A \times N}{A} \times 100$$

$$O = \frac{A \times O + A \times O}{A} \times 100$$

$$P = \frac{A \times P + A \times P}{A} \times 100$$

$$Q = \frac{A \times Q + A \times Q}{A} \times 100$$

※ ●는 ○와 같이 적용

## 2 송변전설비 통계산식

가. 송전설비 단위정지건수 : 총 정지건수 / 100C-km

※ C-km : 송전선로 전압별 전체 회선 공장

나. 변전설비 단위정지건수 = 총 정지건수 / 100MVA

※ MVA : 변압기 전압별 전체 용량

다. 전체 송전선로의 연평균 비계획정지 빈도

$$F_{vc,k} = \frac{1}{Nk} \sum_{k=1}^{Nk} dik$$

- $F_{vc,k}$  : 전압계급(vc)에 대한 빈도지수
- $Nk$  : k년일 때 전압계급의 송전선로 수
- $dik$  : i번째 송전선로에 대한 비계획정지 빈도

라. 종합 총 비계획정지 기간

$$D_{vc,k} = \frac{1}{No,k} \sum_{k=1}^{No,k} dik$$

- $D_{vc,k}$  : 전압계급(vc)에 대한 기간 지수
- $No,k$  : k년에 비계획정지가 발생한 송전선로 수
- $dik$  : i번째 송전선로에 대한 비계획정지 시간

마. 비계획정지가 없는 송전선로의 연간 비율

$$P_{vc,k} = \frac{Nk - No,k}{Nk}$$

- $P_{vc,k}$  : 전압계급(vc)에 대한 기간 지수
- $Nk$  : k년에 각 전압의 송전선로 수
- $No,k$  : k년에 비계획정지가 발생한 송전선로 수



[붙임 3]

전력설비 정지원인 분류표

1. 발전설비

가. 기본 분류표

정 지 종 별	정지발견동기	정 지 원 인	정지원인 부 품	
○ 계획정지 - 계획예방정비정지 - 계획중간정비정지  ○ 비계획정지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 과급정지  ○ 운영예비초과정지	순 시 중 조 작 중 정 비 중 외부인 통보 기 타	진 동 인적과실 자연재해 외물접촉 고장과급 연소결함 이물유입 작업지연 기 타	Gasket, Packing, Seal, Bolt, Nut Diaphragm, Nozzle Spring, Belt, Orifice Strainer, Filter, Gear 피복재, Liner, 내화재, 보온재 지지물, Hanger 간격편, Wedge Casing, Housing Hdr, D/M, Reservoir Tube, Tube 용접부 Tube Plate, Water Box A/H Element, Seal Plate Link 기구 축, 축수, Blade, Impeller 계기류, Valve 류 회 전 부 분 Diffuser, 접점, 접촉자, 단자, Switch, Fuse, Coil, Brush 애자, Brush, Relay CT, PT, 피뢰기 전 기 회 로, 전선, Cable, 진공관, IC, Tr, SCR, Module 절 연 재, 기 타	
	<b>병해시요일</b>			<b>정 지 상 태</b>
	월 요 일 화 요 일 수 요 일 목 요 일 금 요 일 토 요 일 일 요 일			소 손 (과 열) 파 손 (절 손) 균 열, 편 흘 파 열 탈 락, 박 리 폐 쇄 누 설 부 식 변 형 동 작 불 량 진 동 이 음 오 손, 부 착 이 완 마 모 접 지 단 락 단 선
	<b>정지시 부하사항</b>	<b>병해시 날씨</b>		
	1/2 부하 3/4 부하 4/4 부하 증 발 중 감 발 중 기 동 중 기 타	맑 음 구 름 비 뇌 우 눈 풍 우 풍 설 바 람		
	<b>정지시 운전상황</b>			
	Load Limit	<b>정 지 원 인</b>		
	Governer Free	설계제작결함		
	<b>정지발견동기</b>	시공결함		
	감시장치	정비미흡		
보안장치	오동작			
	경년변화			

## 나. 정지원인 분류표

원인 분류	정 의
설계제작결함	○ 납품된 기기나 부품 등의 제작 또는 설계 하자에 기인한 것
시공결함	○ 공사시 제작이나 설계에는 하자가 없으나 시공상 결함에 기인한 것
정비미흡	○ 제작, 설계, 시공상에 문제는 없으나, 점검 기준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미시행, 예방점검 또는 정비 불완전, 고장복구시 불완전한 조치 등에 기인한 것
오 동 작	○ 고장이 아닌 상태 하에서 기기 또는 보호 및 제어시스템 오동작이나 오부동작에 기인한 것
경년변화	○ 장기간 운전에 의해 열화, 부식, 마모, 침식 및 물리적인 성질의 변화 등으로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
진 동	○ 차량 통행, 기초공사, 지진 등 지반의 진동 ○ 시공불량, 정비불량에 포함할 수 없는 회전기기의 일시적인 진동 등
인적과실	○ 오조작 등 운전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 ○ 정비 또는 작업시 작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
자연재해	○ 눈, 비, 바람, 홍수, 해일, 산불, 자연발화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
외물접촉	○ 자동차 및 항공기의 충돌, 중장비 접촉 등 일반인의 비고의적인 과실과 조류등지, 수목, 연, 애드벌룬 등의 외물 접촉으로 인한 것
고장파급	○ 다른 전기공작물(계통 또는 타 호기) 고장파급 영향으로 정지한 것
연소결함	○ 제작, 설계, 시공, 정비상에 특별한 결함이 없으나 저질연료 사용, 연소불완전 및 연소계통의 문제 등에 기인한 것
이물유입	○ 해양 또는 하천의 생물이나 이토 등의 이물 유입에 기인한 것
작업지연	○ 정비중 설비상의 결함이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계획된 일정보다 작업이 지연되어 급전지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 타	○ 상기 원인분류체계에 없는 원인에 기인한 것



□ 복합화력설비(양수포함)

설비명	정지원인 개소	설비명	정지원인 개소
배열회수 보일러	구조물 드럼, 헤다, 튜브 급수, 관수순환설비 주증기, 재열증기계통 각종 드레인, 벤트 연돌설비 관수처리설비 기 타	제어설비	가스터빈제어설비 증기터빈제어설비 HRSG제어설비 현장설비/장치 기 타
		전기설비	발전기 발전기부속설비 여자기 변압기 차단기류 보호계전기 회로설비 전동기 무정전전원장치 기 타
가스터빈	공기압축기 터빈 연소설비 조작유/윤활유설비 조속설비, 보호장치 흡/배기밸브 연료/분무설비 기동, 터닝설비 기 타		
		부속설비	냉각설비 압축공기설비 옥외연료설비 지역난방공급설비 물처리, 정수설비 보조보일러 비상발전기 기 타
증기터빈	고압/중압터빈 저압터빈 주요밸브 조속장치, 보호장치 축밀봉증기설비 조작유, 윤활유설비 복수설비 순환수설비 기 타		

□ 원자력설비

설비명	정지원인 개소	설비명	정지원인 개소
공학적안전설비	격납용기 안전주입계통 보조급수계통 비상디젤발전기 기 타	발전기	전기자 권선 계 자 권 선 주 축/베어링 여 자 장 치 수소/밀봉유장치 냉각수 장 치 기 타
원자로 본 체	원자로노심(원전연료) 원자로 내부구조물 기 타		
원자로제어 및 보호	전원공급장치 전자카드 Switch Transmitter Indicator Sensing Line 기 타	전기설비	주 변압기 소내 변압기 전 동 기, 차 단 기 개 폐 기, 단 로 기 피 퇴 기 계기용변성기 계기, 계전기류 전 기 회 로 무정전전원장치 DC Power 기 타
원자로냉각재 계통	증기발생기 펌 프 류 밸 브 류 열교환기류 배 관 류 탱 크 류 필 터 류 기 타		증기발생기 제어
터빈본체	Casing Blade 베 어 링 주 축 장 치 조 속 장 치 보 호 장 치 주 요 밸 브 기 타	터빈제어	전원공급장치 전자카드 Switch Transmitter Indicator Sensing Line 기 타
		기타설비	방사선감시설비 폐기물처리설비 건 물 기 타 설 비
터빈부속	급수펌프 복 수 기 복수펌프 급수가열기 순환수펌프 습분분리기 냉각수로, 수관 배 관, 관수, 정수장치 밸 브 류 기 타	인적실수	운전원 관련 정비원 관련 외부인 관련

## 2 송변전설비

### 가. 기본 분류표

정지종별	정지원인	정지상태	정지설비	
순간정지 일시정지 장시간정지	제작불량 시공불량 보수불량 오동작 진동 자연열화 부식 풍우 염진해 인적실수 사고파급 화재 과부하 빙설해 외물접촉 낙뢰 원인불명 기타	도괴 파손(변형) 단선 절연파괴 케이블손상 화재	○ 송전설비	
			- 철탑	도괴 파손(변형)
			- 전선	단선 접속개소 단선 (직선스리브 개소) 전선근접 및 혼촉 절연파괴
			- 케이블	케이블손상절단 접속함 절연파괴
			- 가공지선	OPGW 단선
			- 애자, 금구	애자섬락파손 금구류
			- 기타	
			○ 변전설비	
			- M.Tr	
			- BUS	
정지/복구일시	전압별		- 차단기 및 개폐기	GCB OCB VCB MCSG GIS DS
			- 변성기	CT PT
			- 피뢰기	
			- 계전기	
정지시요일	765kV 345kV 154kV 66kV		- 조상설비	
			- 기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정지시 날씨				
맑음 구름 비 뇌우 눈 풍우 풍설 바람				
정전내용				
정전부하(MW)				
정전시간(시:분)				

나. 정지원인 분류표

원 인 별		설 명
설비결함	제작불량	○설계 또는 제작상의 결함에 기인한 것 - 설계불량, 제작불량, 재질불량, 가공불량, 용접불량, 절연불량 등
	시공불량	○공사시의 시공상 결함에 기인한 것 - 용접불량, 가공불량, 취부불량, 조정불량, 절연불량, 기준불량 등
보수불량	정비불량	○예방점검, 정비불완전 등에 기인한 것 - 조정불량, 절연불량, 정비불량, 기준불량 등
	오 동 작	○고장이 아닌 상태 하에서 기기 또는 보호장치의 오동작이나 오부동작에 기인한 것
	진 동	○차량 통행, 기초공사, 지진 등 지반의 진동 ○시공불량, 정비불량에 포함할 수 없는 일시적인 진동 등
	자연열화	○제작, 시공, 정비에 특별한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작물의 재질, 기구 등의 열화에 기인한 것; 자연열화, 절연불량 등
	부 식	○전기 또는 화학작용에 의한 부식
인적실수	운전원과실	○오조작 등 운전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 - 비상사태 또는 비정상상태에서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작업자과실	○정비원 등 작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 - 무단작업, 표준작업절차 미 준수 등
	외부인과실	○외부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 - 무단작업, 표준작업절차 미 준수 등
자연재해	풍우, 뇌우	○바람, 비,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이나, 바람에 의한 수목, 금속편 등의 접촉에 기인한 것
	염진해	○해풍(염), 먼지, 안개, 유독가스 및 매연 등에 기인한 것
	빙설해	○착빙설에 의한 것
	화재	○건조물의 화재, 산불 등에 의한 고장. 단 전기 화재 제외
외물접촉	○자동차 및 항공기의 충돌, 중장비 접촉 등 일반인의 비고의적인 과실과 조류등지, 수목, 연, 애드벌룬 등의 접촉으로 인한 것	
고장파급	○타 설비(계통 또는 타 호기) 고장의파급 영향으로 정지하였을 경우 ○고객전기설비의 고장파급으로 인한 고장	
원인불명	○고장순시 및 조사결과 고장원인이 불분명한 고장	